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86개 종류의 과세자료 중 활용실적이 없거나 중복 제출되고 있는 자료인 광업권 변경등록자료, 광물 생산보고자료 등 10개 종류의 자료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서 제외하고,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로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내역, 변호사의 수임금액자료 등 5개 종류의 자료는 새로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6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권 오 규

**◎대통령령 제2021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주택”을 “주택(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를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제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⑧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상으로”를 “무상이나 저가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 과세기준일”을 각각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서울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전년도”를 “직전 연도”로 한다.

####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

제6조제1항 중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 과세기준일”을 각각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로,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해연도”는 “해당 연도”로 한다.

####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로,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 과세기준일”을 각각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로,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6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부과·징수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고와 납부)”를 “(부과와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전의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을 “물납하려는”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납

부 또는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후단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납부 또는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항,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제7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1.1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과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합산 제외 특례 신설(영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 (1)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도록 함.

(3)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납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인정 요건 완화(영 제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1)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 보완(영 제3조제8항 및 제4조제4항)

(1)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되,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 8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 권 오 규

◎대통령령 제2021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를 말한다.